

의안
번호

827

【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11. 7. 1(금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1. 7. 4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1. 7. 8(금)

2. 제안이유

- 일자리 창출 및 도서정책 추진 등 당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총무국장 분장사무 조정(안 제5조)
 - 도서정책, 정보관리 사무 추가, 공보행정 삭제
- 나. 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 조정(안 제6조)
 - 일자리창출 사무 추가
- 다.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 조정(안 제7조)
 - 대형 체육시설물관리 사무 추가

4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2011. 6. 10. ~ 6. 30.(의견없음)

6.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7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구정의 당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별 분장사무 중 일부를 국간 조정 및 세분화하고, 도서정책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임.
- 이렇게 국별 업무가 조정이 되면 과별 담당도 일부 변경이 있을 것인데, 이에 대한 과별, 담당등 세부적인 사무분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[별표 3](#)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총무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(생략) 2. 자치행정,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, 민간협력, <u>공보행정,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사항</u> 3. ~ 6. (생략)</p> <p>제6조(생활지원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(생략) 2. 복지서비스, 노인정책, <u>여성아동,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</u> 3. (생략) 4. <u>지역경제활성화</u>, 상·공업, 농·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 5. ~ 6. (생략)</p> <p>제7조(건설도시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6. (생략) 7. 비기술부서의 설계·심사·감독·준공업무·신규 프로젝트, <u>기타 공사관련 지시사항 처리</u></p>	<p>제5조(총무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<u>평생교육, 도서정책, 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</u> 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생활지원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여성복지, 아동보육,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,</u> ----- 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건설도시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-----<u>대형 체육시설물 관리, 그 밖에 공사관련 지시사항 처리</u></p>